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0나8197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0. 선고 2020가소11584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,403,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6. 9. 1.부터 2018. 8. 2.까지 피고의 강요 혹은 기망에 의하여 16,403,507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, 그 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는 2016. 1.경부터 2018. 8.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,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그 과정에서 원고가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의 지급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창현, 판사 김용한, 판사 노태현